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27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제1발표

「고대 유가(儒家)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의 의의」
(정희철,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연구보조원)

제2발표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 대응」
(정진혁, 연세대 사학과 박사과정)

○ 일시: 5월 27일(금) 15:00 ~ 18:00

○ 장소: Zoom 회의

이 자료집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019S1A5C2A02082825)

목차

제1발표

- 「고대 유가(儒家)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의 의의」
(정희철,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연구보조원) 5

제2발표

-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 대응」
(정진혁,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31

고대 유가(儒家)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의 의의

철학과 박사과정 정희철

서지사항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儒學研究> 第59輯 2022.
5월호 예정

연구목적

- 고대 유가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고대 유가의 수치심(恥) 일반에 대한 연구X)

==> 1. 수치심(恥)의 구체적으로 성격
2. 형정(刑政)과 수치심(恥)의 관계

선행연구 검토

- 유가의 수치심(恥)에 대한 종래 논의는 주로 윤리학적·도덕 심리학적 영역에서 이루어짐.

유가의 도덕적 자기완성(self-cultivation) 이론, 수기(修己)의 측면에서 접근.

=> 형정(刑政)에서의 의의에 대한 접근 빈약

- 저스틴 티왈드(Justin Tiwald)의 연구가 주목됨

Tiwald, Justin, "Punishment and Autonomous Shame in Confucian Thought", *Criminal Justice Ethics*, 36:1, 2017, 45-60.

선행연구 검토-티왈드 연구 요약

- 유가적 수치심(恥)은 '자율적(autonomous)'인 것. 무엇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로부터 불편함을 느낌.
- 타인의 연륜, 경험, 지식 등에 의존하는 경우는 '자율적'이라 하기에 부족함.
= 타인의 수치심을 곧이곧대로 자신의 수치심으로 수용하는 것까지 '자율적 (autonomous)'이라 칭할 수 없음

선행연구 검토-티왈드 연구 요약

*'유가적 수치심(恥)의 자율성'에 대한 세 가지 해석 가능성만 제시

- 1. 스스로의 인식이나 느낌을 통해 시비를 가르려고 하는 열망(aspiration)으로부터 도출.
- 2.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도출.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통적 예법이 따를만 하다는 체험에 기초.
- 3(1+2). 예법의 근거를 알고자 하는 열망 + 예법을 따를만 하다는 경험적 신뢰

선행연구 검토-티왈드 연구 요약

==> 형벌(punishment=刑)이 위와 같이 규정된 수치심(恥)의 배양을 방해.

- 형벌은 기본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것에 기반을 둠.
- 유가적 수치심(恥)의 핵심은 타인의 시선, 법의 유무, 처벌의 공포와 관계없이 수치심(恥)을 가지게 되는 자율성.
- 수치심(恥)의 자율성이 '형벌이 주가 되는 통치'에 대한 반대의 주된 근거

=> Backgrounding punishment & Foregrounding shame

선행연구 비판: '자율적 수치론'의 한계

- 티왈드는 주로 <論語>를 인용하여 수치심(恥)의 자율성 강조.
- 그러나 피치자로서의 '민(民)'이 티왈드가 규정하는 수준의 '자율적 수치심'을 지닐 수 있다거나 지녀야 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움.
- '민(民)의 수치심(恥)' = '군자 의 수치심(恥)'?

선행연구 비판: '자율적 수치론'의 한계

-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마련입니다. 「顔淵」 "君子之德風, 小人之德草, 草上之風, 必偃."
- 윗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민(民)은 부리기 쉽다. 「憲問」 "子曰: 上好禮, 則民易使也."
- 윗사람이 의(義)를 좋아하면 민(民)은 감히 복종하지 않음이 없다. 「子路」 "上好義, 則民莫敢不服."

선행연구 비판: '자율적 수치론'의 한계

- Loubna, El Amine의 지적: 민 (民) 일 반 에 게 요 구 되 는 성향(disposition)은 군자에게 요구되는 유덕함(virtuousness)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위계적 질서정연함(orderliness)의 유지를 위해 기대되는 성향

El Amine, Loubna, *Classical Confucian political thought: a new interpret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33.

선행연구 비판: '자율적 수치론'의 한계

- 유가가 '민(民)은 자율적인 수치심(恥)을 가져야 하며, 때문에 민(民)의 자율적 수치심(恥)을 저해하는 형벌의 남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본적 전제가 불확실.
- 유가류(儒家類)로 분류되는 문헌 일반에서 나타나는 수치심(恥)과 형(刑)의 관계에 대한 묘사들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지 않았음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행실을 제어함은 자기를 기준으로 제어하지 않고, 민(民)으로 하여금 권면하고 부끄러워하는 바가 있게 해서 그 말을 실천한다.

<禮記>, 「表記」, "... 是故聖人之制行也, 不制以己, 使民有所勸勉愧恥, 以行其言."

- 서인(庶人)은 그 일에 수고스러워 예(禮)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禮)를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孔子家語>, 「五刑解」 " ... 以庶人遽其事而不能充禮, 故不責之以備禮也."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유가는 치자(治者) 계층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상정하고, 이것을 민(民)에게 적용하려 함.
- 수기(修己)의 측면에서 군자가 지녀야 할 덕목인 수치심(恥)과, 형정(刑政)의 측면에서 민(民)이 지녀야 할 덕목인 수치심(恥)은 다름.
-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이 지니는 의의를 알려면 유가의 수치심(恥) 개념 일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민(民)'의 수치심(恥)에 관련되는 언급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함.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민(民)의 수치심(恥)이 생겨나는 원리

"윗사람이 탐욕스러움을 싫어하면 아랫사람은 다툼을 수치스러워하며, 윗사람이 과단성이 있으면 아랫사람은 염치가 있다."

<大戴禮記> 「主言」 "上惡貪, 則下恥爭; 上強果, 則下廉恥."

"윗사람이 탐욕스러움을 싫어하면 아랫사람은 다툼을 수치스러워하며, 윗사람이 염치있고 양보하면 아랫사람은 수치심(恥)과 절개가 있다."

<孔子家語>, 「王言解」 "上惡貪, 則下恥爭; 上廉讓, 則下恥節."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위정자의 기호(嗜好)가 그대로 민(民)의 기호(嗜好)로 전이. 마찬가지로 위정자의 수치심(恥)이 민(民)의 수치심(恥)으로 전이.
- 위정자의 '가르침(敎)'이 민(民)의 수치심(恥)을 결정
- 위정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가 그대로 민(民)이 '부끄럽게 여기는 바'로 이식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그러므로 (성왕(聖王)은) 덕스러운 명성을 두텁게 하여 선도하고, 예의를 밝혀서 인도하며, 충신(忠信)을 지극히 하여 아껴주고, 현능한 이들을 높이고 기용하여 차 서를 두고, 작위와 그에 맞는 복식과 상으로써 펴주고, 작업을 때에 맞게 하며 임무를 가볍게 해주어 조정해주고, 길러주기를 적자(赤子) 보호하듯이 하였다. 정령(政令)이 안정되고 풍속이 통일되었는데도 풍속에서 벗어나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백성들은 그런 이를 미워하지 않음이 없고 해독과 재앙으로 여기지 않음이 없어서 마치 상서롭지 못한 것을 불제(祓除)하듯 하였다.

<荀子> 「議兵」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위의 대목에서 민(民)의 도덕적 호오(好惡)가 형성되는 원리 살펴볼 수 있음.

위정자가 예(禮)에 부합하는 제도를 완비하고 현능한 이를 숭상하며 은혜를 베푸는 데 힘쓰는 등 일련의 도덕적 행위 => 가르침(敎) 시행
=> 풍속이 통일 => 민(民)의 호오(好惡)가 자연스럽게 위정자의 호오(好惡)와 일치

=> 위정자가 도덕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민(民)도 그대로 수치스럽게 여김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위와 같은 교화의 원리에서 민(民)의 수치심(恥)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도 자연히 유추가능.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김에, 윗사람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윗사람이 행하는 바를 따른다. 윗사람이 이 사물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더 심하게 좋아함이 있다. 그러므로 윗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는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민(民)의 표준이다."

<禮記> 「緇衣」 "子曰：下之事上也，不從其所令，從其所行．上好是物，下必有甚者矣．故上之所好惡，不可不慎也，是民之表也．"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유가는 교화의 과정을 선창(唱)과 화답, 물체와 그림자(影), 소리와 메아리(嚮) 등으로 비유
- 민(民)의 덕목은 위정자의 덕목에 대한 자동적 반응.
- 민(民)은 위정자의 실제 도덕적 행위 여부, 실제로 덕목을 지녔는지 여부만을 모방. 민(民)은 군주가 덕목이 있어도 그대로 따라가고 덕목이 없어도 따라감.

유가류(儒家類) 문헌에서 '민(民)의 수치심(恥)'

- 민(民)은 어떠한 자기반성적 성찰(reflection)이나 고도의 추상적 사유를 통해서 수치심(恥)지니는 것이 아님. 유가에게 있어 민(民)은 도덕적으로 투입과 산출이 고정되어 있는 그야말로 기능적인(functional) 존재.
- 민(民)의 수치심(恥)은 '비자율성'을 그 성격으로 지님

형정(刑政)과 '민(民)의 수치심(恥)'의 관계

- 민(民)은 위정자의 교화와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수치심(恥)을 길러낼 수 없음.

=> 형정(刑政)을 시행하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교화의 작업이 이뤄져야 함

형정(刑政)과 '민(民)의 수치심(恥)'의 관계

- "윗사람이 도(道)를 잃어놓고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효로써 가르치지 않고 욕사를 다스린다면 이는 죄 없는 이를 죽이는 것이다 윗사람의 가르침이 시행되지 않으면 죄는 민(民)에 게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孔子家語> 「始誅」

- 민(民)은 자율적으로 덕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모범을 보임)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民)의 수치심이 없는 것은 민(民)의 죄가 아님.
- 자율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할 능력 자체가 없기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없음.

형정(刑政)과 '민(民)의 수치심(恥)'의 관계

- “예(禮)로써 가지런히 하면 민(民)이 수치심(恥)을 느끼고, 형(刑)으로써 형(刑)을 막으면 민(民)이 두려워합니다.” ... “예(禮)로써 민(民)을 가지런히 함은 마차 모는 일에 비유하자면 고삐입니다. 형(刑)으로써 민(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마차 모는 일에 비유하자면 채찍입니다. 여기에서 고삐를 잡아서 저쪽에서 움직이는 것은 마차를 잘 모는 것입니다. 고삐가 없는 데 채찍질만 한다면 말은 길을 잃을 것입니다.”

<孔叢子> 「刑論」



형정(刑政)과 '민(民)의 수치심(恥)'의 관계

==>

유가의 핵심적 논리: 형정(刑政)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민(民)에게 수치심(恥)을 배양시키는 가르침이 선행된 이후에야
형정(刑政)이 비로소 본격화 되어야 함

결론

- 유가의 형정론에서 수치심(恥)은 티왈드가 규정하는 비자율성(타인의 연륜, 경험, 지식 등에 의존, 타인의 수치심을 곧이곧대로 자신의 수치심으로 수용)을 지님.
- 유가가 민(民)의 '자율적 수치심'을 지키기 위해 형벌의 최소화를 긍정했다는 것은 근거가 빈약
- 교화를 통해 민(民)에게 수치심(恥)을 배양해주기 이전에 형벌부터 사용하는 통치에 대한 비판 + 민(民)에게 수치심(恥)을 심어준 이후에야 형정(刑政)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강변 = 유가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이 가지는 의의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 대응*

정 진 혁**

- | | |
|---------------------------|------------------------------|
| I. 머리말 | III. 추국청의 말세론 사건 형사대응 |
| II. 중대 형사사건 발생과
추국청 개좌 | IV. 엄국득정(嚴鞠得情) 운영론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후기 사회에서 말세론은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이자 운동이었다. 작게는 지방의 패서 사건에서부터 크게는 전국적인 군사반란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건의 인물들을 결집한 중심은 말세론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 말세론에 주목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제출되었다.

그중 첫째 경향은 사회 운동으로서의 말세론에 주목한 연구 경향이다. 민중운동사의 시각에서 미륵, 생불 신앙을 통한 민중운동을 밝힌 선구적인 연구¹⁾를 시작으로, 말세론의 하나인 정감록 참위를 소문화로 파악하고 지배문화(성리학)에 포섭되지 않는 면모를 통해 하

* 본고는 제64회 한국역사학대회 한국사연구회 분과 〈말세의 사상과 사회적 대응〉(2021년 10월 30일)에서 공개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원고이다.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대표논저: 2017, 『조선후기 정감록 결사조직과 변혁운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9, 「18세기 말 정부의 '정감록 참위설' 인식과 대응책」, 『역사와 현실』 111.

1) 정석중, 1983,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위문화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입증한 연구가 제출되었고,²⁾ 말세론 사상이 조선후기 저항적 성격의 문화로 성립되어 민중 성장과 저항운동의 동력으로 활용되었다고 파악한 연구³⁾ 등이 제출되었다. 위 연구들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에서 미륵, 생불, 정감록 참위 등 말세론이 정부의 성리학과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였고 민중 운동의 자양분이자 중요한 사회적 동력으로 작동했음이 밝혀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 변동으로서의 말세론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최근의 경향을 형성한다. 기존의 민중사적 말세론 연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말세론을 사상 그 자체로서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선후기 정감록 참위가 형태적으로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시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⁴⁾ 도선비기(道詵秘記), 남사고비기(南師古秘記)와 같은 비결서 뿐 아니라 사회 저변에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도 정감록 참위 형성의 요소로 활용될 만

2) 백승중, 2006a, 『정감록 역모 사건의 진실게임』 푸른역사 ; 2006b,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 2008, 『조선후기 천주교와 <정감록>-소문화집단의 상호작용-』 『교회사연구』 30

3) 우윤, 1988,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 -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 ; 정석중, 1993,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 하원호, 2004, 「조선후기 變亂과 민중의식의 성장」 『사학연구』 75 ; 윤병철, 2005, 「정감록의 사회변혁 논리와 사회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28 ; 고성훈, 2012, 「조선후기 유언비어 사건의 추이와 성격 -정감록(鄭鑑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 35 ; 2015, 「조선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47 ; 최선혜, 2013, 「조선후기 숙종대 황해도 지역의 '生佛' 사건」 『역사학연구』 50 ; 한승훈, 2019,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박상현, 2015, 「18세기 '해도진인설'의 변화 양상과 의미」 『역사와현실』 96 ; 2017, 「조선후기 '예언가 남사고'의 탄생과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20 ; 2019, 「조선후기 '眞人出現說'의 형성과 그 향방」 『역사와 경계』 110 ; 2020, 「『도선비기(道詵秘記)』의 변화 과정과 그 역할」 『사림』 72 ; 김신희, 2018,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 『한국문화』 84 ; 2020,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21, 「『남사고 예언서』의 성립과 확산」 『한국문화』 94

큼 유연한 사상이었음을 보여주는 한편,⁵⁾ 19세기 동학과 결부되어 추후 사회 변동의 사상적 동력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었다.⁶⁾ 조선 후기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어가는 정감록 참위의 사상적인 변천을 추적함으로써 정감록 참위 연구를 사상사적 측면으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에서 정감록 참위를 비롯한 말세론들이 민중 의식의 성장을 대표하고 민중운동의 동력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사상 자체는 변동과 발전을 거듭하는 유기적인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세론이 ‘민중문화’로서 지배문화와 대척적 위치에 있다고 간주한다는 점이다. 주로 가난한 무당, 술사, 유랑지식인과 같은 하층민들이 활용하였고, 이 때문에 지배문화인 성리학과는 또 다른 하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위와 같이 기존 연구가 말세론 사건의 반체제적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강조하는 시각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발생한 조선 정부의 ‘위로부터의 압력’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남형, 혹형을 행한 영조 시기의 법제적 대응을 다룬 연구,⁷⁾ 좌도(左道)를 불식하기 위해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대책을 논한 연구,⁸⁾ 말세론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정부의 태도를 고찰한 연구⁹⁾ 등이 있으나,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국왕의 정책적 방향을 고찰한 논문이기에 조선후기 300여년 간 수십 차례 이상 발생한 말세론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알기는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차적으로 말세론 범죄행위

5) 김신희, 2020, 「‘병자호란’의 기억과 ‘남사고 예언’」 『한국문화』 92

6) 박상현, 2021, 『조선시대 도참의 전개와 성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조운선, 2008, 「영조 9년, 남원 만복사 폐서 사건의 정치적, 법제적 고찰」 『전북사학』 33

8) 고성훈, 1994, 『朝鮮後期 變亂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9) 정진현, 2019, 「18세기 말 정부의 ‘정감록 참위설’ 인식과 대응책」 『역사와현실』 111

에 대한 국가공식기구의 법적처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자료를 계량화하여 통계분석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말세론 사건 통제와 제도운영론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이 가진 유교적 특성, 법치적 특성 양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중대 형사사건 발생과 추국청 개좌

조선 건국 세력은 유교국가이자 법치국가 건설을 목표로 조선을 건국하였다. 건국 초부터 법전 개수 정책을 이어왔고, 성종 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완성으로 조선 국가의 체제정비를 일단락하였다.¹⁰⁾ 조선 정부는 유학적 교화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유학적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작업도 시행하였다. 궁궐 내의 도교 사당인 소격서를 철폐하고 조선 초 각종 지방의 신령들을 사전 제도로 흡수 통합할 뿐 아니라 불교 사원의 재조정을 통하여 고려시기의 불교-도교적 사회질서를 점차 성리학적 유교 질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¹¹⁾

한편 국권(國權)에 도전하는 역모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왕릉과 제실을 훼손하는 행위, 국왕의 멸망을 논하는 행위 등은 국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역모 행위는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민심과 천의(天意)를 동일시하는 유교적 관점에서 민심 이반은 천명에 근거한 국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사사건 또는 단순 형사사건과는 달리

10) 정호훈, 2004, 「조선전기 法典의 정비와 『經國大典』의 성립」, 『조선 건국과 經國大典체제의 형성』, 해안, 75쪽

11) 한우근, 1976, 「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 『한국사론』 3

역모 사건에 대해선 유심히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명률(大明律)』을 형사제도의 기초로 설정하고 『경국대전』 조항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국가 질서를 저해하는 이반 행위들을 통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태조가 즉위 교서에서 『대명률』을 형률의 기초로 인용한다고 선언한 이후¹²⁾ 조선 정부는 『대명률』을 기초로 형정을 실시하되 구체적 상황에서는 『경국대전』의 「추단(推斷)」조를 마련하여 상황에 맞게 참작하였다.¹³⁾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대명률』 「모반대역(謀反大逆)」조에 따라 능지처사하고 예언을 전파하여 백성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대명률』 「조요서요언(造妖書妖言)」조에 따라 참형하도록 하는 엄격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성문화된 법조항에 근거하여 역모 행위를 국왕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국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역모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국왕의 명령에 따라 특별사법기관인 추국청을 설치하였다.¹⁴⁾ 추국청은 모반, 모대역, 대불경 등 십악(十惡)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왕에 대한 직간접적 위해를 시도하는 악역, 왕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범상부도, 왕을 상징하는 왕릉과 전패의 훼손에 대하여 추국청을 열도록 규정하였다.¹⁵⁾ 추국에는 전현직 정승, 의금부 당상관, 대간 등 주요 관원이 입시하였다.¹⁶⁾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추국을 진행한 이유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형사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국의 일반적인 절차는 심문-진술-형신-재심문-자백-결안-처형

12)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13) 조지만, 2007, 『조선시대의 형사법 -大明律과 국전-』, 경인문화사, 157쪽

14) 오갑균, 1999,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 삼영사, 43쪽

15) 이하경, 2021,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영조시기 『推案及鞫案』 사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3, 96~100쪽

16) 김영석, 2013,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법사학연구』 48, 320쪽

의 순서로 진행된다.¹⁷⁾ 첫 심문인 평문(平問)에서는 형신을 동반하지 않고 대화로 조사를 진행하고, 첫 심문에서 자백이 나오면 형신과 재심문의 절차가 생략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거나 특정 내용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보이면 신장(訊杖)으로 매질을 하는 형신(刑訊)으로 전환하였다. 심문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석방되었고, 관련은 있으나 그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배, 유배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백 후 결안을 작성하고 사형 처분을 받았다.

이때 피심문자를 압송하고 추국을 개좌하는 과정부터, 심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결하는 전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추안(推案)이나 국안(鞫案)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심문기록을 모아 놓은 자료가 『추안급국안』이다.¹⁸⁾ 『추안급국안』은 1601년(선조 34)~1892년(고종 29)까지 약 300년간 추국청에서 조사, 심문한 추국기록을 담은 편년 사료이다. 무신란, 을해옥사, 신유박해,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 중대 반란 사건을 비롯해 전패작변, 왕릉방화 등 왕실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들 다수가 수록되어 있다. 『추안급국안』에는 총 265사건, 피심문자 3,305명¹⁹⁾의 심문기록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추안급국안』은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료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선 후기 추국청에서 처리한 사건 일부

17) 김우철, 2010,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211쪽

18) 이하경, 2018,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 영조와 정조 시대《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쪽

19) 『推案及鞫案』에 수록된 추국청 사건 기록은 266건이나, 그 중 1건은 포도청 수사기록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推案及鞫案』 21권 389~490쪽에 수록된 「乙亥二月二十四日捕廳推案」은 추국청이 아니라 포도청 심문기록이다. 「乙亥二月二十四日捕廳推案」은 「逆賊尹志等推案」의 예비조사 성격으로 포도청에서 작성된 1차 조사 기록으로 파악된다. 포도청의 기록과 추국청의 기록은 형식과 절차 상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포도청에서는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포도청과 추국청, 두 기관의 기록을 같은 층위로 파악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乙亥二月二十四日捕廳推案」을 추국청의 조사 기록으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추국청에서 다른 사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推案及鞫案』의 사건 개수를 265개로 파악하였다.

가 누락되었다. 『추안급국안』에는 추국청에서 다룬 역모 사건이 수록되어 있으나 홍경래난, 임술민란 등 몇 가지 대형 사건은 누락되었다. 그리고 『국청일기(鞫廳日記)』, 『친국일기(親鞫日記)』, 『정국일기(庭鞫日記)』, 『추국일기(推鞫日記)』가 따로 운영되어 일부 사건들은 『추안급국안』이 아닌 다른 공초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둘째, 일부 사건 공초의 경우 일부분이 결락되어 자료가 불완전하다.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일부 사건은 공초의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분이 결락되어 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안급국안』은 전근대 형사 판례집 중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첫째로 장기 연대기자료라는 점이다. 약 30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일 기관에서 작성한 특정 범주 사건 공초를 연대기별로 수록한 형사사건판례집으로서 『추안급국안』의 의의가 있다. 정조 재위기에 한정된 자료라는 점에서 연대기적 한계를 지닌 『심리록(審理錄)』과 달리 『추안급국안』은 선조~고종 시기를 포괄하는 연대기적 장점을 가진다. 둘째는 방대하고 세세한 사건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265건에 대한 사건 심문재판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국청으로부터 심문당한 피심문자만 3천 3백여 명에 달한다. 그리고 이 피심문자의 진술은 요약본이 아

20) 『推案及鞫案』 전체 추국일수의 3%(1935일 중 59일) 분량의 기록이 결락되어 있다. 이 결락은 『推案及鞫案』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이라고 생각된다.

사건명	연도	전체 일수	결락 일수
신축년 김운절 반역사건	선조 34	5	1
계해년 역적 이윤희 범죄 사건 문서	인조 1	15	1
정한 옥사 문서	인조 9	35	14
임신년 추안급국안	인조 10	9	2
합이완, 김인 추안	숙종 20	37	11
숙정, 설향 등 추안	숙종 27	7	1
병술년 죄인 임부 등 추안	숙종 32	22	9
병술년 9월 19일 죄인 임부 등 추안	숙종 32	13	8
기유년 추안급국안	영조 5	12	1
신해년 역옥 추안	영조 7	25	10

닌 있는 그대로의 발언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심문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등 개인적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장기간의 방대한 자료인 『추안급국안』을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분석한다면 사건 간의 특성과 변화 추이를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방법론은 특정 사건을 선택적으로 분석하거나, 일부 왕대의 자료를 분석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추안급국안』이 가진 장기 연대기자료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체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300여년 간의 추국정 운영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제도의 연속성과 변곡점을 추적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계적 분석으로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전체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피심문자의 통계이다. 『추안급국안』에는 총 265사건, 피심문자 3,305명의 심문기록이 수록되었다.²¹⁾ 심문을 받은 사람은 추국청의 범죄 여부 판단에 따라 석방, 유배, 사형 등 특정 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추국청으로 체포되어 1회 이상의 심문을 받은 피심문자의 최종 처분 내역이다.

21) 『推案及鞫案』 자료 계량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산출하였다.

1. 피심문자 : 추국청에서 심문관으로부터 1회 이상 심문받은 대상을 집계하였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서의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추국청에서 공식적으로 심문을 받은 경우이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피심문자의 신체에 매질을 가하는 경우에는 피형신자로 전환되었다. 동일 인물이 별도의 사건에서 중복되어 심문받는 경우도 있었다(71명). 이들은 사건에서의 처분이 각각 달랐으므로 사건당 각각의 명수로 집계하였다.
2. 피형신자 : 피심문자 중 추국청에서 신장, 압술, 낙형 등 1회 이상의 매질을 당한 경우를 집계하였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서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 범죄행위를 의심받기 때문에 자백을 요구받으며 신체에 매질을 당한 경우이다.
3. 최종처분 : 해당 피심문자에게 내린 최종처분을 『推案及鞫案』에서 확인하여 집계하고, 『推案及鞫案』에 기록이 없는 경우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 관찬사료의 처분 기록을 참조하여 집계하였다.
4. 신장 대수 : 『推案及鞫案』 안에 기재된 신장 매질 대수를 수합하였다. '신장을 때렸다'라고만 나오고 정확한 횟수가 나오지 않은 97회 형신의 경우는 통계(전체 4,815회 중 97회에 해당)에 매질 대수 집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1〉 『推案及鞫案』 피심문자 최종 처분 내역

최종 처분	석방	타관 이송	징계	노비화	도배	유배	사형	물고	미상	총계
피심문자 수(명)	1,085	124	11	32	27	569	775	520	162	3,305
비율	32.9%	3.8%	0.3%	1.0%	0.8%	17.2%	23.5%	15.7%	4.9%	100%

* 전거: 『推案及鞫案』

〈표 1〉의 『추안급국안』 최종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는 가장 높은 비율로 석방 처분(32.9%)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피심문자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거나, 단순 참고인으로 참고심문을 한 경우, 또는 동명이인을 잘못 체포한 경우 심문을 끝낸 후 석방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사형(23.5%)이다. 전술했듯 추국청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중대한 형사사건들을 다루는 장소였기에, 여기에서 혐의가 입증된 피심문자는 사형당하였다. 다음으로는 유배(17.2%)이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는 아니지만, 사건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유배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물고(15.7%)이다. 물고(物故)는 대체로 핵심 관련자로 의심을 받고 자백을 강요받으며 형신을 당하는 도중에 죽는 경우였다.²²⁾ 이들의 대다수의 경우는 신장(訊杖)을 맞고 상처가 덧나 사망하였다. 대체로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피심문자를 여러 차례 형신하다가 물고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관련 깊은 사건연루자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물고자의 경우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최종 판결 없이 기소가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역모 혐의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물고자에 대해선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 연좌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외의 처분 결과인 미상, 도배, 노비화, 징계 등의 처분은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선조 34년(1601)~고

22) 김우철, 2010, 앞 논문, 213쪽

종 29년(1892)까지 약 300년간 265건, 3,305명의 피심문자의 최종처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10명 중 3명은 석방되고, 10명 중 2명은 유배되고, 10명 중 4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심문 규모는 어떻게 결정하였을까? 『추안급국안』에는 총 265개 사건, 3,305명의 피심문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산출하면 사건당 평균 12.5명을 체포하여 심문한 것으로 계산된다. 가장 큰 사건은 영조 4년(1728) 295명을 소환조사한 [무신년, 역적 사건 추안(戊申逆獄推案)] 사건이고, 가장 적게는 현종 12년(1671) [신해년, 전패를 흠친 죄인 애립 심문 기록(辛亥殿牌偷取罪人愛立推案)] 사건에서 1명을 소환조사하였다.

사건 조사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사건의 심각성 파악 정도에 따라 심문 규모를 조절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피심문자 진술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언급되면 심문 범위를 확대하고, 진술에서 사건 파악의 실마리가 파악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종료하였다.

숙종 14년(1688) [무진년, 역적 여환 등 추안(逆賊呂還等推案)] 사건의 예를 들어보자. 피심문자의 발언에 따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가 체포조를 파견하였다. 7월 28일 14명(김돌손, 황회, 법호 등) 체포, 8월 2일 6명(이유선, 이두완 등) 체포, 8월 6일 2명(전성달, 정만일), 8월 7일 7명(정호명, 이긋립 등) 체포, 8월 9일 3명(민호길, 이득견 등)을 체포하였다. 7월 28일에 최초 체포된 피심문자 14명의 진술에서 언급된 관련자를 추가로 심문하기 위해 체포조를 파견하였고,²³⁾ 7월 30일 조사 진행 중에 또 달리 언급된 인물을 추가로 체포하기로 결정한다.²⁴⁾ 이처럼 추국청의 심문 규모는 최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피심문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로 확대되는 유동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와는 반대로 피심문자의 진술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

23) 『推案及鞫案』 권10, 「逆賊呂還等推案」 149쪽

24) 『推案及鞫案』 권10, 「逆賊呂還等推案」 164쪽

을 땀 심문규모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정조 9년(1785)의 [을사년, 역모에 동참한 죄인 유태수 등 추안(謀逆同參罪人柳泰守等推案)]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12월 20일 4명(유태수, 황인택 등), 12월 21일 1명(송두일), 1월 10일 2명(이문목, 김설은동이), 1월 17일 1명(손효충), 1월 27일 6명(이창순, 이창경 등), 정조 10년(1786) 2월 8일 1명(송적중), 2월 10일 1명(박필현)을 체포하였다. 12월 21일 다른 피심문자를 추가 소환해야 사건의 진상을 살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가 체포령을 내렸고,²⁵⁾ 1월 10일 한 번에 세력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체포조를 파견하였으며²⁶⁾ 1월 19일 사건 핵심주동자의 신상을 파악하여 추가로 체포하도록 명하였다.²⁷⁾ 그런데 언급된 연루자 내역이 중구난방이고 정씨 진인, 미륵 등의 존재가 허구임을 파악한 후 기존에 체포된 피심문자만 심문하고 차후 추가 체포조 파견을 중지하였다.²⁸⁾

위의 두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추국청은 심문 중의 '사건 판단'에 따라 사건 심문 규모를 유동적으로 조절했다는 사실이다. 최초 사건 고발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여러 차례 추가로 체포조를 파견하여 피심문자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심문 내용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심문 규모를 확대하거나 중지하였다. 핵심 관련자들을 더 조사해야 하는 중대사건의 경우 체포 규모를 확대하였고, 사건이 크게 위협적이지 않거나 실체가 쉽게 밝혀졌다고 판단한 경우는 1차 체포로 조사 규모를 축소하여 마무리하였다. 요약하자면 사건 심각성 인식 정도와 비례하여 조사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하겠다.

25) 『推案及鞫案』 권24, 「謀逆同參罪人柳泰守等推案」 337쪽

26) 『推案及鞫案』 권24, 「謀逆同參罪人柳泰守等推案」 407쪽

27) 『推案及鞫案』 권25, 「謀逆同參罪人柳泰守等推案」 594쪽

28) 『推案及鞫案』 권24, 「謀逆同參罪人柳泰守等推案」 602쪽

Ⅲ. 추국청의 말세론 사건 형사대응

조선후기에는 무속신앙, 미륵신앙, 생불신앙, 정감록 참위 등 ‘세상이 바뀐다’는 혁세(革世) 사상이 유행하였다. 점증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농민이나 격증하는 경쟁 가운데 정치적으로 소외된 양반들은 ‘세상이 바뀐다’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자신들의 기대를 투영하였다. 민간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혁명’에 대한 기대를 논의하였고, 이는 무속, 미륵, 생불, 참위 등 다양한 사상적 영역의 테두리에서 논의되었다. 실제로 무속신앙은 무교, 미륵과 생불은 불교, 참위는 도교 및 유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각각의 논의는 사상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 사상들은 조선후기 당대를 구(舊) 시대의 마지막, 즉 말세(末世)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아래의 사례들은 『추안급국안』에 언급된 말세론의 예시이다.

- (A) 석가의 시대가 마땅히 다하고, 미륵불(彌勒佛)이 마땅히 나온다. 올해 7월 28일에 처음 비가 내리기 시작해 그믐날에 이르기까지 크게 퍼부을 것이다. 나라가 마땅히 기울 것이니, 우리들이 말을 몰아 쫓아가 도성으로 들어가면, 마치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²⁹⁾
- (B) 정필석(鄭弼碩)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이는 겨우 7세인데 산으로 들어가 공부하여 드디어 생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
저의 아내가 차충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나라를 차지해 가질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정씨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던 사이에 제가 명백히 참여해 들었습니다.³⁰⁾
- (C) 『정감록』 안에 나오는 바다의 섬은 곧 남쪽 바다의 섬을 가리킨다. 그런데 4백 년이 흘러 국운이 약해져 그 해에 만일 해랑적이 나타나면 나무 목(木)자 변의 성씨를 쓰는 사람이 토벌하여 평안하게 할 것이니, 국운에 연한을 두지 말라.³¹⁾

29) 『推案及鞫案』 권10, 「逆賊呂還等推案」 125쪽

30) 『推案及鞫案』 권10, 「辛未十一月車忠傑推案」 882쪽

31) 『推案及鞫案』 권24, 「壬寅逆賊仁邦京來等推案」 162쪽

(A) 사례에서는 불교적 석가-미륵의 대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정하였고,³²⁾ (B) 사례에서는 불교적 생불의 메시아적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³³⁾ (C) 사례에서는 정감록 참위의 4백 년 운수론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였다. 이처럼 각기 미륵, 생불, 참위라는 다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그 논의들의 핵심은 공통적이다. 바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가 종결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미륵이 등장하면 ‘마땅히 나라가 기울 것’이고, 생불이 나타나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정감록』에는 ‘4백 년이 흘러 국운이 약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체제는 구체적으로 ‘조선왕조’를 의미하였다. 조선후기 사회를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말세(末世)’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리하자면 ‘말세론 사건’은 ‘미륵, 생불, 정감록 참위 등 말세론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견 또는 시도했던 형사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가볍게는 말세론을 주변에 퍼뜨리는 와언(訛言)-요언(妖言) 단계에서부터, 특정 결사조직을 형성하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거사모의-거사 단계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정감록 참위, 미륵, 생불 등의 말세론적 상징들은 승려, 무당, 점술가, 유학자 등 다양한 사상적 범주의 인물들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목적을 정해주는 정신적 가치로 기능하였다.

말세론 사건들은 국가의 멸망을 예견, 또는 시도하는 행위였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의 범주로 규정하였다. 역모에 가담한 경우 『대명률』 「모반대역」조에 따라 부대시 능지처사하고 친족을 연좌 처분하였고,³⁴⁾ 예언을 진파하여 백성을 미혹시킨 경우 『대명률』 「조요서요언」조에 따라 참형하였다.³⁵⁾ 그리고 국왕의 멸망을 난

32) 한승훈, 2015, 「미륵의 시대, 진인의 귀환 -조선후기 종교운동에 대한 “반란의 현상학”-」, 『종교연구』 75, 205쪽

33) 최종성, 2012, 「생불과 무당 -무당의 생불신앙과 의례화-」, 『종교연구』 68, 198쪽

34) 『大明律』 「刑律」 「謀反大逆」

35) 『大明律』 「刑律」 「造妖書妖言」

언한 경우 『경국대전』 「추단」조에 따라 참형하였다.³⁶⁾ 조선정부는 말세론 사건을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공안사건의 범주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란사건의 범주로 인식하였다.

1. 광역심문과 엄중처분

그렇다면 추국청에서 말세론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처분했을까?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전체 265건 중 말세론 관련 사건은 42건이다. 그리고 나머지 223건 사건 역시 역모사건, 패서, 왕릉방화, 전패작변 등 반체제적 중대형사사건이었다. 42건의 말세론 사건과 기타 중대형사사건 223건의 판례를 비교 분석한다면 말세론 사건이 지닌 형사사건으로서의 위상을 추측할 수 있다. 두 범주의 사건을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2〉 말세론-비(非)말세론 사건 심문 규모

	피심문자(명)		피형신자(명)		추국청 개좌 횟수(회)		추국청 운영 일수(일)	
	전체	1건당	전체	1건당	전체	1건당	전체	1건당
말세론(42건)	1,040	24.8	540	12.9	501	11.9	511	12.2
非말세론(223건)	2,265	10.2	1,057	4.7	1,431	6.4	1,458	6.5
총계	3,305	12.5	1,597	6.0	1,932	7.3	1,969	7.4

* 전거: 『推案及鞫案』

〈표 2〉에서 사건 심문 규모를 비교검토해 보았다. 주목할 부분은 피심문자의 총계이다. 전술했듯 정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피심문자의 수를 조절하였다.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할 때는 체포를 중지하고,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심문자를 추가로 체포하

36) 『經國大典』 「刑典」 ‘推斷’

였다. 이를 통해 판단하였을 때 사건당 피심문자의 수와 정부의 사건 중대성 인식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피심문자 수가 낮은 경우보다 피심문자 수가 높은 경우 정부의 사건 인식이 심각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말세론 사건 42건에서 총 1,040명의 피심문자가 심문을 받았고, 이를 환산하면 사건당 평균 24.8명을 소환조사 한 것으로 산출된다. 반면, 비(非)말세론 사건 223건에서는 총 2,265명을 심문하였는데, 사건당 평균 10.2명을 조사한 셈이다. 양쪽을 비교해 보면 말세론 사건이 비(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여 건당 약 2.5배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추국청의 운영 규모를 검토해 보겠다. 추국은 일반적으로 당일 개좌, 당일 종료하되 조사가 길어지면, 종료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또는 하루 안에도 친림추국(親臨推鞠), 궐정추국(闕庭推鞠), 금부추국(禁府推鞠)을 바꾸어 중복 개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는 하나의 추국을 열면 당일 개좌, 당일 종료한 뒤, 다시 익일 개좌, 익일 종료하는 식으로 당일 안에 이뤄졌다. 그리고 사건의 실상이 파악되지 않으면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씩 추국을 추가로 개좌하였다. 개좌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 조사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국청 운영 일수 역시 말세론 사건에서 길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³⁷⁾ 말세론 사건에서는 추국청 개좌 횟수가 사건당 11.9회, 추국청 운영일수가 사건당 12.2회로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비(非)말세론 사건의 평균 추국청 개좌 횟수가 사건당 6.4회, 추국청 운영일수

37) 추국 종류를 친림추국, 궐정추국, 삼성추국, 금부추국 중에서 결정하는 것은 국왕의 정치적 판단에 달린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국왕의 재위시기에 따라 추국 종류별 비율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영조 시기의 총 추국 개좌의 37.0%(250/676회)가 친림추국으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영조를 제외한 선조~고종까지의 12명의 왕대 시기에는 4.9%(61/1256회)에 불과한 비율로 친림추국이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추국 종류가 국왕 성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친림추국, 궐정추국, 삼성추국, 금부추국의 추국 종류 분석은 본고에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가 사건당 6.5회인 것으로 나타난다. 말세론 사건은 비(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여 2.5배 더 많은 연루자와 참고인을 소환조사 하였고,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1.9배 더 많은 일수의 추국을 운영하였다.

〈표 3〉 말세론-비(非)말세론 사건의 최종 처분 내역

	석방	타관 이송	징계	노비화	도배	유배	사형	물고	미상	총계
말세론 (42건)	311	38	1	9	11	167	285	186	32	1,040명
	29.9%	3.6%	0.1%	0.9%	1.1%	16.1%	27.4%	17.9%	3.1%	100.00%
非말세론 (223건)	774	86	10	23	16	402	490	334	130	2,265명
	34.2%	3.8%	0.4%	1.0%	0.7%	17.8%	21.6%	14.8%	5.7%	100.00%
총계	1,085	124	11	32	27	569	775	520	162	3,305명

* 전거: 『推案及鞫案』

그렇다면 해당 사건의 최종 처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표 3〉은 말세론-비(非)말세론 사건의 최종 처분 내역이다. 백분율로 비교하였을 때 유배 비율은 17% 내외로 유사하고, 석방률이 비(非)말세론에서 5%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노비화, 도배, 타관이송 등 다른 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부분은 사형율+물고율, 즉 사망률이 다. 사형은 역모죄에 해당하면 집행했고 물고는 역모가 강하게 의심되어 형신하는 도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형자와 물고자는 중대 처벌할 대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문에 사형율+물고율이 정부가 해당 사건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말세론 사건의 경우 사형율+물고율이 45.3%, 비(非)말세론 사건은 36.4%를 차지한다. 해당 비율을 사건당 인물 수로 환산하면, 말세론 사건 1건당 11.2명, 비(非)말세론 사건 1건당 3.7명이 사형 또는 물고를 당하는 것으로 실제 사건당 사망자 수는 3배에 달하였다.

〈표 4〉 말세론-비(非)말세론 사건 형신 강도

	피형신자 수(명)		피형신자 형신 회차(회)		피형신자 매질 대수(대)		피형신자 중 사형+물고자(명)		피형신자 중 사형+물고자 비율
	전체	1건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건당	
말세론(42건)	540	12.9	1,613	3	40,763	75.4	396	9.5	73.3%
非말세론(223건)	1,057	4.7	3,105	2.9	72,907	69	692	3.1	65.5%
총계	1,597	6.0	4,718	3	113,670	72.2	1,088	4.1	68.1%

* 전거: 『推案及鞫案』

위와 같이 말세론 사건에서의 중대 처벌 대상이 많았다고 한다면 심문 강도 역시 강했을 수밖에 없다. 첫 심문에서 자백이 이뤄지는 경우나 일정한 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화로 심문하는 평문(平問)으로 심문한다. 그러나 피심문자가 특정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신장(訊杖) 매질을 동반한 형신(刑訊)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신장 매질을 동반한 형신을 1회 이상 당한 자를 피형신자라고 볼 수 있다. 추국청은 해당 피형신자가 실제로 범죄에 가담했으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해당인을 형신하였다. 육체에 고통을 가하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 가담 사실을 자백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표 4〉에서 형신 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말세론 사건에서는 피심문자 중 사건당 12.9명에 달하는 인물에게 형신을 가했으나, 비(非)말세론 사건에서는 피심문자 중 사건당 4.7명에 불과한 인물에게 형신을 가했다. 비교하자면 비(非)말세론 사건보다 말세론 사건에서는 비율상 5% 높은 비율로 형신을 당했으며, 사건당 실제 인물 수로 환산하면 3배가량의 인물이 형신을 당하였다.

형신의 규모가 컸다면 형신의 수위는 어떠했을까?³⁸⁾ 이는 해당 인물에게 가해졌던 피형신자 당 매질 대수, 그리고 해당 결과로 인

38) 『推案及鞫案』 안에 기재된 신장 매질 대수를 수합하였다. '신장을 때렸다'라고만 나오고 정확한 횟수가 나오지 않은 97회 형신의 경우는 통계(전체 4,815회 중 97회에 해당)에 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한 사형+물고을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먼저 말세론 사건과 비(非)말세론 사건의 피형신자에게 집행된 형신 회차는 평균 3회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형신 과정에서 가해진 매질의 대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말세론 사건 피형신자 540명에게는 1인당 평균 75.4대의 신장 매질이 가해졌으나, 비(非)말세론 사건 피형신자 1,057명에게는 1인당 평균 69대의 매질이 가해졌다. 비율로 보자면 1인당 약 10% 더 높은 빈도로 말세론 사건 피형신자에게 신장이 가해졌다.

더 많은 대수의 매질을 당한 만큼 사망률 역시 높게 나타났다. 피형신자 중 사형+물고자의 비율은 말세론 사건, 비(非)말세론 사건 각각 73.3%, 65.5%로, 말세론 사건에서 약 8% 높게 나타난다. 이들에게 가해진 형신 횟수가 10% 더 많았기 때문에 비례하여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를 사건당 절대 인물 수로 환산하면, 말세론 사건 1건당 9.5명, 비(非)말세론 사건 1건당 3.1명이 형신을 당하던 중 사형 또는 물고 처분되는 것이다. 사건당 사망한 인물 절대 수로 환산하면 3배 많은 수치이다.

이상과 같이 추국청에서 다룬 사건의 심문 규모, 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유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말세론 사건에서는 비(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여 확장된 규모로 심문을 진행하였다. 추국청은 말세론 사건에서 더 많은 관련자를 소환하고 더 오래 추국청을 운영하였다. 둘째, 처분 수위가 높았다. 말세론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사망 처분을 받았다. 셋째, 형신 강도가 높았다. 말세론 사건 관련자에게 더 많은 매질이 가해졌고, 이에 따라 사망 당하는 비율도 높았다. 말세론 사건들은 공통으로 '조선왕조의 멸망'을 핵심 메시지로 공유하였기 때문에 국가 질서에 대한 '사상적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말세론 사건을 '사상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더욱 심화된 처분을 집행한 것이다.

2. 중대 역모에 대한 처분 강화

‘말세론 사건’은 조선후기 ‘미륵, 생불, 정감록 참위 등 말세론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견 또는 시도했던 형사사건’이다. 정감록 참위, 미륵, 생불 등의 말세론적 상징들은 인물들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목적을 정해주는 정신적 가치로 기능하였다. 말세론 사건은 공통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종결을 예언하는 가치지향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생불, 미륵, 무속, 정감록 참위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에서 논의되었고, 정감록 참위로 대표되는 말세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³⁹⁾ 전국 8도의 토속적 정서에 맞게 변형되어 활용되었다.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말세론의 활용방식과 조직의 성격이 다르게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역시 반복적인 말세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차 해당 사건의 사상적, 사회적 맥락을 파악해갔다. 이미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유한준, 박지원, 정약용 등 양반층뿐 아니라 김종수 등 고위관료, 심지어는 국왕 정조까지도 정감록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정조는 정감록이 무신란의 동력이 되었으며, 지관들이 만들고 역적들이 활용한다는 역사적인 변천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17세기 이래 여러 차례 말세론 사건 조사 경험이 뒷받침되어 있었다.⁴⁰⁾ 이 때문에 정부는 말세론이 개입된 사건이라고 하며 무조건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형사제도 운용을 하였다.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은 사건 자체 층위에 차이가 존재했다. 가법계 향촌 단위의 뜬 소문으로 그치는 예도 있었고, 전국 단위의 군사 반란으로 확장하는 사건도 존재하였다. 이 때문에 다양한 성격의 말세론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구분방식이 필요하

39) 백승중, 1999, 「18세기 전반 서북 지방에서 출현한 정감록」 『역사학보』 164, 124쪽

40) 『日省錄』 정조 11년 7월 15일 경진

다. 요언, 흉서·패서, 거사모의 등 사건의 양상이 다양하게 전개되므로 유형별로 특정과 성격을 정리한 위에서 전체적인 성격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⁴¹⁾ 이에 『추안급국안』의 말세론 사건을 와언-요언 단계, 흉서-패서 단계, 거사모의 단계, 거사 단계, 무고모역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와언은 익명의 주창자가 현실문제나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말을 유포하여 민심을 동요시키고 민의 동조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유언비어 유포행위라고 할 수 있고, 요언은 현실문제나 체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지닌 인물들이 모여서 정감록 등의 민간사상을 공부하고 이를 사상적 뒷받침으로 삼아 동조세력을 포섭하면서 현실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와언보다는 진전된 형태의 저항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와언-요언은 각기 패서나 거사모의 단계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한 초기적인 성격을 띤다.⁴²⁾

흉서(凶書)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체제를 비방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서로 돌려보고 동조세력을 모아 나가면서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패서(掛書)는 익명의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사안을 비난하는 내용을 글로 써서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부착하여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이들 유형의 저항을 대표하는 강도 높은 저항형태라 할 수 있다.⁴³⁾ 거사모의는 체제저항을 추구하는 주도 인

41) 해당 구분법은 고성훈의 변란 분석 방법론에 근거한다. 고성훈은 조선후기 변란을 와언-요언, 흉서-패서, 거사모의 단계로 구분하였다(고성훈, 1994, 앞 논문, 21쪽). 본고에서는 해당 연구의 분석방법론을 원용하되, 무고모역과 거사라는 2가지 범주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推案及鞫案』 내에 수록된 사건 중에는 실제로 병란으로 수행된 사건(무신란, 광양란)이 수록되어 있으며, 허위로 말세론 혐의를 무고한 사건도 여러 건 수록되어 있었다. 해당 사건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와언-요언, 흉서-패서, 거사모의, 거사, 무고모역 총 5가지 기준으로 사건을 분류하였다.

42) 고성훈, 1994, 앞 논문, 74쪽

물들이 물리적 거사를 준비하는 저항 형태를 의미하며, 거사는 거사모의가 사전에 발각되지 않은 채 물리적 저항이 수행된 경우를 의미한다.⁴⁴⁾ 사건의 조직적 결합도 및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와언-요언 < 흥서-패서 < 거사모의 < 거사의 순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또 하나의 사건 범주로는 무고모역을 제시할 수 있다. 무고모역이란 타인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⁴⁵⁾ 앞서 살펴보았듯 말세론 역모사건의 주동자로 확인될 경우 추국청으로부터 사형 내지 물고라는 강한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특정 인물을 몰락시키기 위해 해당 인물이 말세론 사건의 주동자라는 허위사실을 고발하는 예도 있었다. 무고모역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모 혐의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허구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무고를 한 주체가 말세론을 활용하여 민심을 어지럽혔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제재대상이 되었다.

위에서 살핀 와언-요언, 흥서-패서, 거사모의, 거사, 무고모역 5가지 사건 구분을 『추안급국안』 42개 사건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말세론 사건의 성격에 따른 정부 대응의 층위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사건의 말세론 사건 42건은 와언-요언 11건, 흥서-패서 5건, 거사모의 16건, 거사 2건, 무고모역 8건으로 구분되었다.⁴⁶⁾

43) 위 논문, 85쪽

44) 위 논문, 20~25쪽 참조

45) 이하경, 2020, 「조선후기 ‘무고모역’의 정치적 의미 -영조 시대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 6쪽

46) 거사 2건에는 영조 4년(1728)의 무신란과 고종 6년(1869)의 광양란이 포함된다. 두 거사는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한 범주로 파악하는 대신, 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사건별 상세 내용은 논문 말미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말세론 사건의 심문 규모

	피심문자 규모(명)		피형신자 규모(명)		추국청 개좌 횟수(회)		추국청 운영 일수(일)	
	전체	1건당	전체	1건당	전체	1건당	전체	1건당
와언-요언(11건)	69	6.3	36	3.3	55	5.0	54	4.9
홍서-괘서(5건)	159	31.8	99	19.8	73	14.6	71	14.2
거사모의(16건)	363	22.6	201	12.6	168	10.5	178	11.1
무신란 거사(1건)	295	295.0	171	171.0	119	119.0	113	113.0
광양란 거사(1건)	6	6.0	0	0	1	1.0	1	1.0
무고모역(8건)	148	18.5	33	4.1	85	10.6	85	10.6
총계(42건)	1,040	24.8	540	12.9	501	11.9	502	12.2

* 전거: 『推案及鞫案』

먼저 〈표 5〉를 통해 심문 규모에서의 차이를 검토해보겠다. 사건당 피심문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와언-요언 사건의 경우 1사건당 6.3명이 심문을 받았는데, 이는 31.8명의 홍서-괘서 사건, 22.6명의 거사모의 사건, 295명의 무신란 거사, 18.5명의 무고모역 사건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이다. 와언-요언 사건 자체가 개인 및 소규모 집단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심문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홍서-괘서 사건, 거사모의 사건, 거사 사건과 같이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진 역모 행위들에 대해선 평균 20명대 중반 이상의 피심문자를 소환하여 큰 규모로 조사하였다. 무고모역 사건의 경우 무고자의 발언에서 나온 관련자 대다수를 심문했기 때문에 와언-요언 사건보다 피심문자 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심문자의 수에 따라 추국청의 운영 기간도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와언-요언 사건 건당 5.0회, 홍서-괘서 사건 건당 14.6회, 거사모의 사건 건당 10.5회, 무신란 거사 119회, 광양란 거사 1회, 무고모역 사건 건당 10.6회를 개좌하였다. 이는 앞서 살핀 피심문자의 수와 대략 비례하는데, 피심문자의 수가 많을수록 추국청 운영규모가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조 4년(1728) 무신란 거사의 경우 피심문자의 수가 매우 많은 만큼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확장된 운영 규모로 진행하였다.

〈표 6〉 말세론 사건의 최종 처분 내역

		석방	타관 이송	징계	노비화	도배	유배	사형	물고	미상	총계
와연-요연 (11건)	명	24	2	1	2		20	17	2	1	69
	%	34.8	2.9	1.5	2.9		29.0	24.6	2.9	1.5	100.0
홍서-괘서 (5건)	명	47	3		2		25	39	40	3	159
	%	29.6	1.9		1.3		15.7	24.5	25.2	1.9	100.0
거사모의 (16건)	명	101	19		3		42	124	47	27	363
	%	27.8	5.2		0.8		11.6	34.2	13.0	7.4	100.0
무신란 거사 (1건)	명	49	11		2	2	55	88	87	1	295
	%	16.6	3.7		0.7	0.7	18.6	29.8	29.5	0.3	100.0
광양란 거사 (1건)	명							6			6
	%							100.0			
무고모역 (8건)	명	90	3			9	25	11	10		148
	%	60.8	2.0			6.1	16.9	7.4	6.8		100.0
총계		311	38	1	9	11	167	285	186	32	1,040

* 전거: 『推案及鞫案』

〈표 6〉은 말세론 사건의 최종 처분 내역이다. 먼저 석방률을 살펴 보자. 와연-요연 사건에서는 34.8%(69명 중 24명), 무고모역 사건에서는 60.8%(148명 중 90명)이 석방되었다. 이는 홍서-괘서 사건 29.6%(159명 중 47명), 거사모의 사건 27.8%(363명 중 101명), 무신란 거사 16.6%(295명 중 49명), 광양란 거사 0%(6명 중 0명)와 비교하였을 때 두드러지게 높은 수치이다. 와연-요연 사건, 무고모역 사건은 개인 또는 소수의 인물에 의해 주도되었고 나머지 인물은 혐의

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흥서-괘서, 거사모의, 거사 등 비교적 조직화되고 규모가 큰 말세론 사건에서는 석방률이 전체의 20%대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석방률이 낮다는 점은 중대 처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당 사망률(사형+물고율)은 흥서-괘서, 거사모의, 거사 등 중대 말세론 사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와언-요언 사건에서 27.5%(69명 중 19명), 무고모역 사건에서 14.2%(148명 중 21명)이 사망한 것과는 대비적으로, 흥서-괘서 사건에서는 49.6%(161명 중 79명), 거사모의에서는 47.1%(363명 중 171명), 무신란 거사에서 59.3%(295명 중 175명), 광양란 거사에서는 100%(6명 중 6명)가 사형 또는 물고 당하였다. 앞서 살폈듯 사건 조직이 소규모이고 조직성이 약할수록 석방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으며, 조직이 대규모이고 조직성이 강할수록 석방률이 낮고 사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말세론 사건의 형신 강도

	피형신자수(명)		피형신자 형신 회차(회)		피형신자 매질 대수(대)		피형신자 중 사형+물고자(명)		피형신자 중 사형+물고자 비율
	전체	1건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건당	
와언-요언 (11건)	36	3.3	88	2.4	1,888	52.4	18	1.6	50.0%
흥서-괘서 (5건)	99	19.8	291	2.9	6,877	69.4	74	14.8	74.7%
거사모의 (16건)	201	12.5	569	2.8	13,994	69.6	134	8.4	66.7%
무신란 거사 (1건)	171	171.0	535	3.1	14,304	83.6	151	151.0	88.3%
광양란 거사 (1건)	0	0	0	0	0	0	0	0	0%
무고모역 (8건)	33	4.1	130	3.9	3,700	112.1	19	2.4	57.6%
총계	540	12.9	1,613	3.0	40,763	75.4	396	1.4	52.8%

* 전거: 『推案及鞫案』

그렇다면 높은 사망률은 형신 강도와 어떤 상관성을 지닐까? <표 7>에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사건당 피형신자의 수이다. 와언-요언의 경우 사건당 3.3명, 무고모역 사건에서는 4.1명이 형신을 당하였으나, 홍서-패서 사건은 사건당 19.8명, 거사모의 사건에서는 사건당 12.5명, 무신란 거사에는 171명이 형신을 당하였다. 와언-요언 사건, 무고모역 사건의 경우 개인 또는 소수의 모임이 주도한 未조직화된 초기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사건에서 혐의를 지닌 인물이 누구인지 비교적 수월하게 파악하였다. 그러나 홍서-패서, 거사모의, 거사 사건들의 경우 거사조직이 비교적 대규모로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사태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혐의를 피하고자 상호 간에 허위진술을 하여 진술 내용의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 말세론 사건에서는 많은 숫자의 인물들에게 형신을 가하여 진술의 진위를 가려낼 필요가 있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신의 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형신 회차 자체는 모든 사건에서 3회 전후의 형신 횟수를 기록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수의 회차를 형신 하여도 한 회차에 가하는 매질의 대수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와언-요언 사건에서 1인당 총 매질 대수가 52.4회였으나, 홍서-패서, 거사모의 단계에서는 70대에 육박하는 수치로 상승하며, 무신란 거사에서 83.6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한편 무고모역 사건의 경우 1인당 112.1대의 매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무고모역은 개인 또는 소규모의 모임이 만든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해당 인물에게 집중적인 추궁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무고모역에서의 피형신자 수는 적으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건들에서의 매질 대수를 훨씬 상회하는 평균 112.1대의 매질이 집중된 것이다.

피형신자에게 가해지는 형신의 강도가 강할수록 형신으로 인한 사망률도 비례적으로 상승하였다. 매질 대수가 가장 낮았던 와언-요언 사건에서는 피형신자의 50%가 사망한 것과는 달리, 홍서-패서 사

건 74.7%, 거사모의 사건 66.7%, 무신란 거사 88.3% 등 매질 대수에 따라 사망률이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끊임 없는 매질에 못 이겨 자백하고 사형당하거나 상처가 덧나 물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질 대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추국청에서 말세론 사건의 심문 규모, 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유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중대 말세론 사건에서는 확장된 규모로 심문을 진행하였다. 추국청은 홍서-괘서, 거사모의, 거사와 같은 중대 말세론 사건에서 더 많은 관련자를 소환하고 더 오래 추국청을 운영하였다. 둘째, 처분 수위가 높았다. 중대 말세론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사망처분을 내렸다. 셋째, 형신 강도가 높았다. 중대 말세론 사건 관련자에겐 더 많은 매질이 가해졌고, 이에 따라 사망 당하는 비율도 높았다. 말세론 사건들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개인이 주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군사 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조직결성 여부 및 조직의 결함 정도를 고려하였고, 특히 군사적 요소를 위험한 요소로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조직적으로 활동한 중대 말세론 사건을 ‘조직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더욱 심화된 처분을 집행한 것이다.

IV. 엄국득정(嚴鞫得情) 운영론

앞서 살폈듯 추국청은 비(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여 말세론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높였고, 와언-요언, 무고모역 사건과 비교하여 중대 말세론 사건인 홍서-괘서, 거사모의, 거사 사건에서 처분을 강화하였다. 이를 본다면 추국청은 사건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처분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추국청의

형사처분 운영론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고 있을까?

정언(正言) 안겸제(安兼濟)가 아뢰기를,

“이항연(李恒延)과 한명후(韓命星)의 음흉한 죄상과 요사스런 정적이 남김없이 죄다 드러났습니다. 당초에 헤아려 처리했던 것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훌륭한 덕(德)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정사를 회복하는 초기를 맞아 엄히 매질하여 속속들이 살피 밝혀서 나라의 법을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항연과 한명후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기(嚴鞠得情 快正王法)를 청합니다.” 하였다.

...

전지(傳旨)로 이르기를, “죄인 이항연과 한명후의 음흉한 죄상과 요사스런 정적이 남김없이 죄다 드러났다. 당초에 헤아려 처리했던 것은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훌륭한 덕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정사를 회복하는 초기를 맞아 엄히 형문하여 속속들이 살피 밝혀서 나라의 법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도록[嚴鞠得情 快正王法] 지시하라.”했다.⁴⁷⁾

위는 영조 39년(1763) [계미년, 역적 심내복 등 추안(逆賊來復等推案)]에서 정언 안겸제의 추국 요청을 영조가 수락하는 내용이다. 안겸제가 말한 내용을 영조가 전지에서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자 모두가 ‘엄국득정 쾌정왕법(嚴鞠得情 快正王法)’의 방법론에 공동으로 동의했다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겠다. 이 용어는 주로 혐의가 있는 인물을 추국할 때, 또는 자백하지 않는 피심문자를 형신할 때 활용하는 용어였다. 이는 영조 시기에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광해군, 인조, 효종, 숙종, 순조 등 여러 왕대에서 비슷한 용법으로 활용된 추국청의 일반적인 용어였다.⁴⁸⁾

47) 『推案及鞠案』 권22, 「逆賊來復等推案」 473쪽

48) 각 용어들은 『推案及鞠案』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嚴鞠得情은 加刑得情, 刑推得情, 推鞠得情, 設鞠得情이라는 용어로도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국문하여 사실을 밝히려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快正王法 대신 以正王法, 快正正法, 快正典刑, 正名邦刑, 快正邦刑 등의 용어로도 나타난다. 나라의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 중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용어가 가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의미 자체를 해석하자면 ‘엄국득정(嚴鞠得情)’은 ‘엄하게 국문하여 실상을 파악한다’로 이해할 수 있고, ‘쾌정왕법(快正王法)’은 ‘왕법을 시원하게 바로잡는다’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용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국(鞠)은 ‘추국청을 설치하여 국문한다’는 의미이고, 정(情)은 ‘사건을 둘러싼 맥락적 진실’⁴⁹⁾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엄국득정의 의미는 엄한 국문(嚴鞠)을 활용하여 사건의 실상(情)을 철저하게 파악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 사실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왕법을 시원하게 바르게 하는 것(快正王法)’의 수단이였다. 여기서 왕법이란 ‘왕이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공기(公器)이자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며 관여하는 것(天下之所共), 혹은 영구히 전해서 준수해야 할 공공의 도구(萬歲公共之器)’⁵⁰⁾로서 국가 운영의 핵심 중추를 의미하였다. 왕법을 바르게 하는 것(快正王法)은 역모행위로 인해 훼손된 사회질서를 천하의 이름으로 바로잡는 행위였다. 왕법을 바로잡기(快正王法) 위해선 사건의 실상을 파악(得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엄한 국문(嚴鞠)이 도구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운영 논리였다.

왕법을 바로잡기 위해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추국청이 사건의 실정을 파악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해당 사건 피심문자들의 심문 내용이었다. 추국청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무거운 죄를 벗어나려고 매질을 참으며 자백하지 않으니 극히 흉악하고 거짓되다. 매를 더 치며 심문하여 사실이 드러나도록 조사”⁵¹⁾하도록 지시하여

嚴鞠得情, 快正王法이라는 용어가 자주 활용되고 있어 대표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49) 김호, 2020, 『정조의 법치』, 휴머니스트, 159쪽

50) 박병호, 2012, 『한국법제사』, 민속원, 109쪽

형신을 가한 것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피심문자가 자백을 했더라도 추국청이 판단하기에 그 자백의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내용이 충분치 않은 예도 있었다. 이 같은 경우 결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추가로 형신을 가하였다. “비록 마치 죄를 자백한 듯했지만 사실은 범죄 사실을 낱알이 털어놓고 죄를 자백한 진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계사에서만 하나하나 거론하며 형문을 청한”⁵²⁾ 것이다.

추국청이 원하는 사건의 실상이 파악되지 않으면 추국의 규모는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1688년(숙종 14) [무진년, 역적 여환 등 추안(逆賊呂還等推案)] 사건에서는 추국의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총 5차에 걸쳐 32명을 체포하였는데, 최초 체포된 피심문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가 파악되자 추가 체포조를 파견하였고,⁵³⁾ 또 다른 단서가 될 인물을 추가로 체포하기로 한다.⁵⁴⁾ 이러한 방식으로 10차례의 추국으로까지 확대하였고, 주동자들이 자백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게 된 이후에야 추국을 종료하였다.

이처럼 사건이 지닌 중대성에 따라 심문 규모, 형신 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피심문자들의 증언에서 도출되는 사건의 실체가 간단할수록 사건 조사는 간략하게 마무리되었고, 실체가 복잡하고 심각할수록 사건 조사는 길어지고 광범해질 수밖에 없었다. 심문 규모, 심문 강도, 처분 수위에서의 차이는 사건이 지닌 실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앞서 통계데이터를 통해 검토한 것처럼 말세론 사건은 비(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면 심문 규모가 컸고, 조직성이 강한 중대 말세론 사건일수록 심문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부는 말세론과 같이 ‘사상적 위험성’이 높거나, 거사모의, 거사 등 군사조직을 결부한 ‘조직적 위험성’이 높은 사건을 더 심각하

51) 『推案及鞫案』 권2, 「逆适獄事文書」 760쪽

52) 『推案及鞫案』 권4, 「逆賊李忠慶文書」 577쪽

53) 『推案及鞫案』 권10, 「逆賊呂還等推案」 149쪽

54) 『推案及鞫案』 권10, 「逆賊呂還等推案」 164쪽

게 받아들이고 더욱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점이다.

말세론은 국가의 명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체제 사상이었기 때문에 말세론을 활용한 사건은 더 많은 법적제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말세론 사건은 비(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심문 규모가 컸고 형신 강도가 높았다. 그 결과 사건 조사과정에서 심한 매질을 이기지 못해 자백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는 말세론 사건이 비(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한층 '사상적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말세론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사건의 전모를 살살이 파악하기 위하여 추국청은 더 큰 규모와 강한 강도의 심문을 진행했다.

한편 동일하게 말세론을 활용했다 할지라도 그 사건 내부의 '조직적 위험성'에 따라서 추국청의 조사 규모와 강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개인 또는 미발달한 모임이 주도한 와언-요언 사건, 무고모역 사건의 경우 심문 규모, 사망률 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이 사건들은 주동자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작은 규모의 조사로도 해당 사건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발달한 조직 또는 군사적 조직으로 진행된 흥서-괘서 사건, 거사모의 사건, 거사 사건 등에서는 심문 규모, 형신 강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 사건들에선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고,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더 많은 회차의 심문과 형신이 필요했다. 그리고 각자의 생존을 위한 허위진술, 세부 내용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피심문자의 진술은 진위를 의심받았고, 이 때문에 한층 더 많은 대수의 매질이 가해졌다. 가해진 매질 대수가 많을수록 자백 또는 물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졌다.

정리하자면 추국청은 '엄국특정 쾌정왕법'의 기조에 따라 역모 사건을 통제하였다. 추국청은 손상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왕법을 올바르게 집행(快正王法)할 필요가 있었다. 왕법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건의 정황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得情)이었다. 사건

정황 파악을 위해선 엄한 국문(嚴鞫)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엄한 국문을 통해야만 피심문자의 자백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실정을 파악하고 왕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는 '사상적 위험성'과 '조직적 위험성'이 고려되었다. 사건이 사상적, 조직적으로 위험할수록 더 넓고 깊게 조사하였다. 말세론과 같이 반체제 사상을 공유하는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되었고, 군사 반란 조직과 같은 조직이 갖추어질수록 더 철저하게 처벌되었다. 그 결과 다른 종류의 사건과 비교하여 중대 말세론 사건에 광범한 심문, 강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조선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사건이 지닌 '체제 위험성'에 대응하도록 법적 처분을 단행했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에 대한 추국청의 형사대응을 분석하였다. 조선 국가는 국권에 도전하는 역모 행위에 대한 법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성문화된 법조항에 근거하여 역모 행위를 국왕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국권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역모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국왕의 명령에 따라 특별사법기관인 추국청을 설치하였다. 조선후기 '미륵, 생불, 정감록 참위 등 말세론을 활용하여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견 또는 시도했던 형사사건'인 말세론 사건 역시 추국청의 조사 대상이었다.

추국청에서 다른 사건의 심문 규모, 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추국청은 '체제 위험성'에 따라 심문 규모, 처분 강도에 차이를 두었다. 말세론 사건들은 공통으로 조선왕조의 멸망을 핵심 메시지로 공유하였기 때문에 국가 질서에 대한 '사상적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

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말세론 사건을 '사상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비(非)말세론 사건과 비교하여 더욱 심화한 처분을 집행하였다.

한편 말세론 사건들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개인이 주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군사 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조직적 위험성'의 수준이 각자 달랐다.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조직결성 여부 및 조직의 결합 정도를 고려하였고, 특히 군사적 요소를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조직적으로 활동한 중대 말세론 사건을 '조직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더욱 심화된 처분을 집행하였다.

이 같은 처분에서의 차이의 바탕에는 '엄국득정 쾌정왕법'의 운영론이 있었다. 추국청은 손상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왕법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집행(快正王法)할 필요가 있었다. 왕법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건의 정황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得情)이었다. 사건 정황 파악을 위해선 엄한 국문(嚴鞫)이 불가피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엄한 국문을 통해서야만 피심문자의 자백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실정을 파악하고 왕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는 '사상적 위험성'과 '조직적 위험성'이 고려되었다. 사건이 사상적, 조직적으로 위험할수록 더 넓고 깊게 조사하였다. 말세론과 같이 반체제 사상을 공유하는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되었고, 군사 반란 조직과 같은 조직이 갖추어질수록 더 철저하게 처벌되었다. 그 결과 다른 종류의 사건과 비교하여 광범한 심문, 강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조선 정부는 체제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사건이 지닌 '체제 위험성'에 대응하도록 법적 처분을 단행했다.

본고는 통계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론적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본고에서는 피심문자수, 피형신자, 형신 횟수, 형신 매질 대수, 추국 개좌 횟수, 추국 운영 일수 등 『추안급국안』에 수록된 수치를 비교분석하여, 사건이 가지는 중대성을 추론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사건들을 수치로 계량화할 때는 사건 자

체가 가지는 역사적 맥락이 무화(無化)된다는 난점이 있다. 가령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더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수치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시도한 계량적 통계분석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을 것이다. 공통 요소를 결합하여 사건을 추출한다면, 해당 사건 내부의 층위 차이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추안급국안』 같이 분량이 갖춰진 데이터로 분석한다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계량분석이 갖는 난점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분석이 조선후기 말세론 사건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추국청, 『추안급국안』, 엄국득정(嚴鞠得情), 말세론, 형정, 정감록
투고일 : 2022. 02. 10 심사완료일 : 2022. 03. 04 게재확정일 : 2022. 03. 04

〈부록〉 조선 후기 『推案及鞫案』 말세론 사건의 형사처분 내역

연도	왕대	사건명	사건 특성	석방	타관 이송	징계	노비화	도배	유배	사형	물고	미상	총합계
1601	선조 34	신축년, 길운절 반역 사건	거사 모의	12						12		4	28
1623	인조 1	계해년, 역적 이유림 범죄 사건 문서	거사 모의	9					1	2	20	2	34
1628	인조 6	무진년, 송광유 옥사 문서	무고 모역	25	2				4	1			32
1628	인조 6	무진년, 유효립 범죄 사건 문서	거사 모의	8					6	19	9	1	43
1631	인조 9	신미년, 정한 옥사 문서	거사 모의	25					5	14	8	2	54
1646	인조 24	병술년, 역적 안익신 등 추안	거사 모의	22					4	33	1	18	78
1676	숙종 2	병진년, 요승 처경 심문 기록	요언	5	1				8	1			15
1682	숙종 8	노계신 추안	와언	7					3	1	1		12
1682	숙종 8	임술년, 역적 허새, 허영 추안	무고 모역	16				9	7	3	2		37
1687	숙종 13	정묘년, 양우철 추안	무고 모역	7							1		8
1688	숙종 14	무진년, 역적 여환 등 추안	거사 모의	8	17				1	12			38
1691	숙종 17	신미년 11월, 차충걸 추안	요언	1					4	3			8
1692	숙종 18	임신년, 이철한 추안	무고 모역	8	1				3	3	1		16
1694	숙종 20	갑술년, 함이완, 김인 등 추안	무고 모역	26					6	2	4		38
1697	숙종 23	정축년, 이영창 등 추안	거사 모의	10	1				2	3	3		19
1697	숙종 23	정축년, 홍기주 등 추안	거사 모의							1	3		4
1713	숙종 39	계사년, 죄인 이동석 등 추안	요언	8						1		1	10
1728	영조 4	무신년, 역적 사건 추안	거사	49	11		2	2	55	88	87	1	295
1729	영조 5	기유년, 죄인 이석효 추안	무고 모역	1						1			2
1733	영조 9	계축년, 원팔 심문 기록	패서	10			1		2	2	2		17
1748	영조 24	무진년, 죄인 이지서 추안	패서	9	1				3		1		14
1755	영조	을해년 2월,	패서	7	1		1		8	5	13	3	38

연도	왕대	사건명	사건 특성	석방	타관 이송	징계	노비화	도배	유배	사형	물고	미상	총합계
	31	역적 윤지 등 추안											
1755	영조 31	올해년 5월, 역적 심정연 등 추안	홍서	21					11	30	24		86
1760	영조 36	경진년 2월, 죄인 신후일 등 추안	요언	2					3		1		6
1763	영조 39	계미년, 죄인 주영홍 등 추안	요언	4		1	1		1	1			8
1768	영조 44	무자년, 죄인 황응직 등 추안	요언						2		1		3
1782	정조 6	임인년, 역적 문인방, 이경래 등 추안	거사 모의	1					2	4	1		8
1785	정조 9	을사년, 역모에 동참한 죄인 유태수 등 추안	거사 모의	4	1		3		3	5	2		18
1801	순조 1	신유년, 사학 죄인 강이천 등 심문 기록	요언	1						1	1		3
1804	순조 4	갑자년, 죄인 이달우, 장의강 등 심문 기록	요언	3	1				2	2			8
1812	순조 12	임신년, 죄인 이진채 등 추안	거사 모의						3	6			9
1813	순조 12	계유년, 난언범상 죄인 백태진 등 추안	와언						1	2			3
1826	순조 26	병술년, 죄인 김치규, 이창근, 유성호, 이원기 국안	폐서		1				1	2			4
1826	순조 26	병술년, 죄인 박형서, 정상채, 신계량 국안	요언							3			3
1829	순조 29	기축년, 대역부도 죄인 이노근 국안	요언							1			1
1836	현종 2	병신년, 역적 남공언, 남응중, 남경중, 문현주 옥안	거사 모의							5			5
1853	철종 4	계축년, 김수정, 홍영근 '심문 기록	거사 모의						3	2			5
1868	고종 5	무진년, 모반대역 죄인 정덕기 등 국안	거사 모의	1						3			4
1869	고종 6	기사년, 역적 민회행 등 국안	거사							6			6
1870	고종 7	경오년, 진주 죄인 김희국 등	거사 모의	1					12				13

연도	왕대	사건명	사건 특성	석방	타관 이송	징계	노비화	도배	유배	사형	몰고	미상	총합계
		국안											
1871	고종 8	신미년, 역적 이필제, 정기현 등 국안	거사 모의							3			3
1872	고종 9	임신년, 의금부 역적 김응룡, 오윤근 등 국안	와언				1		1	2			4
합계				311	38	1	9	11	167	285	186	32	1040

* 전거: 『推案及鞠案』

참고문헌

1. 자료

『推案及鞫案』,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大明律』, 『經國大典』, 『續大典』

2. 단행본

김 호, 2020, 『정조의 법치』, 휴머니스트
박병호, 2012, 『한국법제사』, 민속원
백승중, 2006a, 『정감록 역모 사건의 진실게임』, 푸른역사
백승중, 2006b,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오갑균, 1999,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 삼영사
오영교 편, 2004, 『조선 건국과 經國大典체제의 형성』, 혜안
정석중, 1983,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정석중, 1993,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조지만, 2007, 『조선시대의 형사법 -大明律과 국전-』, 경인문화사

3. 연구논문

고성훈, 1994, 『朝鮮後期 變亂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고성훈, 2012, 「조선후기 유언비어 사건의 추이와 성격 -정감록(鄭鑑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 35
고성훈, 2015, 「조선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 『역사민속학』 47
김신희, 2018, 「‘정감록’ 기억의 형성과 예언서 출현」 『한국문화』 84
김신희, 2020, 「‘병자호란’의 기억과 ‘남사고 예언」 『한국문화』 92
김신희, 2020, 『조선후기 정감록 예언의 역사적 변천 -기억에서 기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신희, 2021, 「‘남사고 예언서’의 성립과 확산」 『한국문화』 94
김영석, 2013,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법사학연구』 48
김우철, 2010,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 박상현, 2015, 「18세기 '해도진인설'의 변화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96
- 박상현, 2017, 「조선 후기 '예언가 남사고'의 탄생과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20
- 박상현, 2019, 「조선 후기 '真人出現說'의 형성과 그 향방」 『역사와 경계』 110
- 박상현, 2020, 「『도선비기(道詵秘記)』의 변화 과정과 그 역할」 『사림』 72
- 박상현, 2021, 『조선시대 도참의 전개와 성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승중, 2008, 「조선후기 천주교와 〈정감록〉-소문화집단의 상호작용-」 『교회사연구』 30
- 우 윤, 1988,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 -후천개벽, 정감록,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
- 윤병철, 2005, 「정감록의 사회변혁 논리와 사회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28
- 이하경, 2018,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 -영조와 정조 시대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하경, 2020, 「조선후기 '무고모역'의 정치적 의미 -영조 시대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
- 이하경, 2021, 「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영조시기 『推案及鞫案』 사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63
- 정진혁, 2019, 「18세기 말 정부의 '정감록 참위설' 인식과 대응책」 『역사와 현실』 111
- 조윤선, 2008, 「영조 9년, 남원 만복사 패서 사건의 정치적, 법적적 고찰」 『전북사학』 33
- 최선혜, 2013, 「조선후기 숙종대 황해도 지역의 '生佛' 사건」 『역사학연구』 50
- 최종성, 2012, 「생불과 무당 -무당의 생불신앙과 의례화-」 『종교연구』 68
- 하원호, 2004, 「조선후기 變亂과 민중의식의 성장」 『사학연구』 75
- 한승훈, 2015, 「미륵의 시대, 진인의 귀환 -조선후기 종교운동에 대한 "반란의 현상학"-」 『종교연구』 75
- 한승훈, 2019,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우근, 1976, 「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 『한국사론』 3

〈ABSTRACT〉

Criminal response of the Chu-Kuk-cheong(推鞠廳)
to the Malse-ron(末世論) case in the
late Joseon Dynasty

Jung, Jin-Hyuk

This study analyzed the criminal response of the Chu-Kuk-cheong(推鞠廳) to the late Joseon Dynasty's Malse-ron(末世論) case.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a legal control system for conspiracies to challenge national sovereignty, and established the Chu-Kuk-cheong. The Malse-ron case, which was a "criminal case that predicted or attempted the fall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Malse-ron such as Mi-reuk(彌勒), Saeng-bul(生佛), and Jeong-Gam-rok(鄭鑑錄)," was also subject to inquisition by the Chu-Kuk-cheong.

Behind this difference was the operation theory of the 'Strict inquisition to check the circumstances, and Enforcement of the royal law(嚴鞠得情 快正王法)'. The Chu-Kuk-cheong needed to properly enforce the royal law to restore damaged national sovereignty. Strict inquisition worked as an inevitable means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of incidents. This is because it was only through strict inquisition that the confession of the interrogator could be induced, and the basis for legally punishing them could be obtained.

In the process of grasping the situation of cases and implementing the royal law, 'ideological threat' and 'organizational threat' were

considered. As a result, extensive interrogation and strong disposition were made compared to other types of cases. The Joseon government prepared a legal mechanism to maintain the system and took legal action to respond to the “system threat” of criminal cases.

Key Words: Chu-Kuk-cheong(推鞠廳), Malse-ron(末世論), ‘Strict inquisition to check the circumstances(嚴鞠得情), Criminal administration, Jeong-Gam-rok(鄭鑑錄)